

한국지도학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한국지도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5조(시행세칙)에 의거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회비) 연회비의 금액과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는 임원 100,000원, 정회원 3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납부 시기는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2. 회비는 학회 구좌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군복무 중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4.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3조(표창)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표창한다.

제4조(사무국 구성)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총무부에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의 직원은 총무부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두고,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제반 행정 및 일반 사무
2.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무
3. 회장 또는 총무부장이 위임한 업무
4. 본회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
5.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업무
6. 분과위원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업무

제6조(고문 및 명예회장) 학회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둔다.

1. 고문은 전직 명예회장 또는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원로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학회의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국제교류분과위원회 : 국제지도학회 및 관련 국제학회 간에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2. 지도교육분과위원회 : 지도 및 지도학에 관한 교육 훈련과 각급 학교의 지도 교육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3. 고지도분과위원회 : 고지도 및 지도 발달사에 관한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4. 지도제작분과위원회 : 지도 편집 및 제작 전반에 관한 기술과 정보, 실제 응용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사업 수행)

1. 분과위원회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분과위원회에서 연차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1. 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1. 학회의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학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에 한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학회 사업수행 상 필요한 예산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학회 기금에서 보조한다.
3. 수지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학회 재산에 편입시키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제12조(간접비의 관리)

1. 학회 명의로 프로젝트(외부 용역 사업)를 수주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간접비를 징수한다.
- 가. 업체(또는 개인)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경우 : 수주금액의 2~5%

나. 학회와 업체(또는 개인)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경우 : 수주금액의 6~10%

다. 학회가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경우 : 수주금액의 10~15%

2. 구체적인 간접비 요율은 학회와 업체(또는 개인)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분간은 최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접비를 적게 징수하는 대신 프로젝트 수행 관련 업무는 업체(또는 개인)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시행세칙은 2005년 8월 26일 임시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국제교류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국제지도학회 및 회원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소재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 국제교류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연락, 회의록 작성,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의 총무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① 국제지도학회 관련 총괄 업무
- ② 국제지도학회 회원국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 사업
- ③ 국경 및 영토 분쟁과 관련된 연구
- ④ 본 학회의 대내외 홍보
- ⑤ 해외 정보 수집
- ⑥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작성
- ⑦ 국제학술대회 유치와 관련된 업무

제5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도제작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지도제작에 관련된 각종 연구 및 지원 활동이 목적이다.

제2조(소재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 지도제작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연락, 회의록 작성,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의 편집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 ⑤ 지도 출판 및 제작 업체, 지도 유통업체, 지도 제작 기법 연구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① 지도 제작에 대한 자문
- ② 지도 제작 기법 향상에 대한 연구
- ③ 도로교통지도 등 판매지도에 대한 심의
- ④ 해외 배포용 국내 지도에 대한 심의
- ⑤ 외국에서 제작된 지도의 수집 및 분석
- ⑥ 기타 지도 제작 관련 주요 사항

제5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고지도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고지도에 관련된 각종 연구 및 지원 활동이 목적이다.

제2조(소재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 고지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연락, 회의록 작성,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의 총무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 ⑤ 고지도 전문연구자, 고지도 관련 업무 수행자를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① 고지도의 발굴 및 수집
- ② 고지도의 연구
- ③ 영토 분쟁, 지명 분쟁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 ④ 고지도 관련 각종 프로젝트 수주
- ⑤ 기타 고지도 관련 주요 사항

제5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도교육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지도와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지원 활동이 목적이다.

제2조(소재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 지도교육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연락, 회의록 작성,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의 학술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 ⑤ 지도 교육 전문가, 독도법 교육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① 초중등학교 지도 교육의 활성화
- ② 지도 교육 관련 교재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 ③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독도법 교육
- ④ 지도 관련 유공자 선정 및 포상
- ⑤ 기타 지도 교육 관련 주요 사항

제5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